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5일, 김현정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현정 의원)

농산물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공산품과 달리 수급과 가격결정의 변동폭이 큼.

특히 최근 들어 ‘금사과’, ‘금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유통구조’ 문제가 지목되고 있음.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직접 구매자’로 이어지는 거래단계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와 같은 비효율 등으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디지털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이 법률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통해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중소농어가의 시장교섭력 문제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농수산물 분산과 효과적인 가격발견 역할을 수행하며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되었음.

매매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형(商物一致形) 거래에 따른 물류 비효율 및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장 분할·점유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수산물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2023. 1. 17.)하였음.

특히, 도매기능 혁신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현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

매시장을 운영 중임. 농수산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경우 ① 산지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 ② 도매법인의 제3자판매(가공업체, 중소형마트, 식자재업체 등 판매), ③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수집(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음)가 허용되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과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발전해 나가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